

FSS/2311-06 : 종속기업투자주식(영업권) 과대계상

- **쟁점 분야:** 종속기업투자주식(영업권)
- **관련 기준:**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
- **결정일 :** 2022년
- **회계결산일 :** 2016.1.1.~ 2016.12.31.

1. 회사의 회계처리

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상 영업권 및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회수 가능가액 평가 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종속기업 주식의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 20%를 가산하여 추정함으로써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고 판단한 결과, 영업권(연결) 및 종속기업투자주식(별도)에 대한 손상차손을 미인식하였다.

2. 회계기준 위반 내용

종속기업투자주식 전체를 회계단위로 보고 영업권을 평가할 때, 경영권프리미엄을 고려하여 가치 평가할 수 있으나, 평가를 위해 선택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. 또한 해당 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법을 사용해야 하고, 공정 가치 측정 시 회계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사용해야 한다.

회사는 선택한 회계단위와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시 사용한 평가방법 등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,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종속기업주식의 공시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따라 영업권(연결) 및 종속기업투자 주식(별도)을 과대계상하였다.

3.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

-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(자산손상) 문단104에 따르면, 현금창출단위(영업권이나 공동자산이 배분된 최소 현금창출단위집단)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.
-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(회계 추정의 변경 및 오류) 문단14에 따르면, 거래,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이 없는 경우, 경영진은 회계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.
-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(재무제표 표시) 문단117에 따르면,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목적 적합한 회계정책을 공시해야 한다.

4. 감사절차 미흡사항

① 회계감사기준 200(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) 문단15 및 회계감사기준 500(감사증거) 문단6에 따르면,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,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,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.

② 회사가 선택한 회계단위와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방법에 대해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,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종속기업 주식의 공시가격에 경영권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영업권 등을 과대계상 하였음에도 감사인은 자산손상 및 공정가치와 관련된 감사절차 등을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다.

5. 시사점

종속기업투자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회계기준상 종속기업투자주식의 회계단위는 개별단위주식 또는 전체투자주식 중 목적적합성 및 표현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하며, 회사가 채택한 회계정책을 주석에 공시해야한다.

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평가 시 개별단위주식으로 회계단위를 선택했다면 활성시장 공시가격을 사용하고, 전체투자주식으로 회계단위를 결정했다면 경영권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사용가치를 평가할 수 있지만 경영권프리미엄의 산정근거 등이 객관적이고 신뢰가능해야 한다.